



의안번호	제호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회)

의결사항

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등
11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“제식”을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바꾸고 “피탈되다”를 “빼앗기다”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,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으로써 「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」 등 11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,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.

2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등 11개 행정안전부령

일부개정령안

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등 11개 행정안전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「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“절취선”을 “자르는 선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경비업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1조에 따른”으로, “제9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9조에 따른”으로, “자에 대하여는”을 “사람에게는”로, “소정의”를 “정해진”으로, “교부하여야”를 “교부해야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14조제4항에 따라”으로, “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같은 조 제7항에 따른”으로,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, “관리하여야”를 “관리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충가”를 “충받침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지급하

여서는 아니되며”를 “지급해서는 안 되며”로, “회수하여야”를 “회수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의”를 “사직 의사”로 한다.

별표 5 제6호 장비기준란 중 “안면”을 “얼굴”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“PVC(비닐)”를 “폴리염화비닐(PVC)”로 한다.

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작성요령란 중 “수 개”를 “여러 개”로 한다.

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작성요령란 중 “수 개”를 “여러 개”로 한다.

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작성요령란 중 “수 개”를 “여러 개”로 한다.

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“병과”를 “병과(兵科)”로 한다.

제3조(「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 구분의 상란 중 “훈격 구분”을 “훈격(공훈에 따른 훈장, 포장 등의 등급) 구분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」의 개정)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입회하에”를 “참관하에”로, “열람하여야”를 “열람해야”로 한다.

별표 1의 1의 신규채용의 구비서류란 중 “(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)”를 “(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3장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중 “병과”를 “병과(兵科)”로 한다.

제5조(「경찰복제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
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경찰복식의 종류 및 제식”을 “경찰복식의 종류·형태 및 규격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경찰장견장”을 “경찰장 어깨표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제식(制式)”을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식”을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식”을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계급장 및 경찰장견장)”을 “(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찰장견장”을 “경찰장 어깨표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식”을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“제식”을 각각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제식”을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제식”을 각각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경찰장견장”을 “경찰장 어깨표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5호 중 “경찰장견장”을 “경찰장 어깨표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제식”을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 및 제2호 표의 제목 중 “제식”을 각각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표의 제목 중 “제식”을 각각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경찰장견장”을 “경

찰장 어깨표장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의 그림 및 1) 중 “경찰장견장”을 각각 “경찰장 어깨표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의 그림 및 1) 중 “경찰장견장”을 각각 “경찰장 어깨표장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마목의 그림 및 1) 중 “경찰장견장”을 각각 “경찰장 어깨표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바목의 그림 및 1) 중 “경찰장견장”을 “경찰장 어깨표장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사목1) 중 “경찰장견장”을 “경찰장 어깨표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아목의 그림 및 1) 중 “경찰장견장”을 각각 “경찰장 어깨표장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표의 제목 중 “제식”을 각각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라목의 제식란 중 “제식”을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한다.

별표 4의 제목 중 “경찰장견장”을 “경찰장 어깨표장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표의 제목 중 “제식”을 각각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제3호 표 외의 부분 중 “경찰장견장”을 “경찰장 어깨표장”으로 한다.

별표 5 표의 제목 중 “제식”을 각각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하고, 같은 표의 색상 및 재질란 제7호 중 “재귀반사”를 “재귀반사(입사한 광선을 광원으로 그대로 돌려보내는 반사를 말한다)”로, “염화비닐(PVC)”을 “폴리염화비닐(PVC)”로 한다.

별표 6 표의 제목 중 “제식”을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하고, 같은 표의 제식란 제6호나목2) 중 “압인”을 “압인(押印: 눌러 찍음)”으로 한다.

별표 7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표의 제목 중 “제식”을 각각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4호 상의의 제식란 가목3) 중 “명찰”을 “이름표”로 하며, 같은 호 점퍼의 제식란 라목1) 및 7) 중 “명찰”을 “이름표”로 하고, 같은 표 제5호 기타의 도형란 자목, 같은 호 기타의 제식란 자목 및 같은 호 기타의 색상 및 재질란 자목 중 “견장”을 각각 “어깨표장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제6호 기타의 도형란 아목, 같은 호 기타의 제식란 아목 및 같은 호 기타의 색상 및 재질란 아목 중 “견장”을 각각 “어깨표장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7호라목 제식란 라목1) 중 “대퇴부”를 “넓적다리”로 하며, 같은 표 제12호 상의의 제식란 다목3) 및 라목3) 중 “명찰꽃이”를 각각 “이름표꽃이”로 하며, 같은 호 재킷의 제식란 자목3) 중 “견장”을 “어깨표장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3호가목2) 중 “압인”을 “압인(押印: 눌러 찍음)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악천후 시에는”을 “거친 날씨에는”으로, “제1항에 불구하고”를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37조의5제2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”를 “지정을 받으려는 자”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인장”을 “도장”으로, “인영”을 “인영(印影: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49조제3항 중 “교육필증”을 각각 “교육확인증”으로, “교육필증발급대장”을 “교육확인증 발급대장”으로, “보관하여야”를 “보관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교육필증”을 각각 “교육확인증”으로, “교육필증발급대장”을 “교육확인증 발급대장”으로 한다.

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”를 “지정을 받으려는 경우”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7호 내지 제9호의”를 “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”로, “이를 제출할”을 “제출할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“인장”을 각각 “도장”으로 한다.

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변경하고자 하는 때”를 “변경하려는 경우”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“인장”을 “도장”으로 한다.

제121조제3항 중 “영수필증에 소인하고”를 “영수확인증에 접수 도장을 찍고”로 한다.

제131조제3항 및 제6항 중 “영수필증”을 각각 “영수확인증”으로 한다. 별표 1의 종류란 중 “현수식”을 “현수식(매달식)”으로 하고, 같은 난 중 “측주식 중형”을 “옆기둥식 세로형”으로 하며, 같은 난 중 “측주식

횡형”을 “옆기둥식 가로형”으로 하고, 같은 난 중 “문형식”을 “문형식(門形式)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1호 차량 신호등의 종류란 중 “횡형”을 각각 “가로형”으로, “종형”을 각각 “세로형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차량 신호등의 설치기준란 중 “횡형사색등”을 “가로형 사색등”으로, “횡형 사색등”을 “가로형 사색등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차량 보조등의 종류란 중 “종형”을 각각 “세로형”으로 하고, 자전거 신호등의 종류란 중 “종형”을 각각 “세로형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자전거 신호등의 설치기준란 중 “시인성”을 “시인성(視認性: 대상물의 존재 또는 모양이 먼 거리에서도 알아보기 쉬운 성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노면 전차 신호등의 종류란 중 “종형”을 “세로형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휘도”를 “휘도(輝度: 광원의 단위면적당 밝기의 정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별표 4 표의 제목 중 “횡형”을 “가로형”으로, “종형”을 “세로형”으로 한다.

별표 6 I. 일반기준 제1호사목(2) 중 “전주 기타 공작물”을 “전봇대나 그 밖의 공작물”로 하고, 같은 호 아목 비고 중 “한국산업표준[KS T 3507(산업 및 교통 안전용 채귀 반사 시트)]”를 “한국산업표준[KS T 3507{산업 및 교통 안전용 채귀반사(입사한 광선을 광원으로 그대로 돌려보내는 반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시트}]”로 하며, 같은 호 차목 중 “화살표 선단”을 “화살표가”로 하고, 같은 호 타목(1) 중 “악천

후”를 “거친 날씨”로 하며, 같은 일반기준 표 제2호마목 중 “화살표 선단”을 “화살표가”로 하고, 같은 표 II. 개별기준 제1호나목 129의 종류란 중 “고원식 횡단보도”를 “고원식 횡단보도(주변 차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며, 같은 목 135의 표시하는 뜻란 및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“도로상이나도로연변”을 각각 “도로상이나 도로변”으로 하고, 같은 135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“라바콘”을 “교통콘(traffic cone)”으로 한다.

별표 16 제2호가목 음주운전교육의 교육방법란 중 “지필검사”를 “필기검사”로 한다.

별표 17 제6호 교통안전교육기관란 중 “교육필증”을 “교육확인증”으로 한다.

별표 17의2 II. 개별기준 제3호 중 “교육필증”을 “교육확인증”으로 한다.

별표 18 제2종의 소형면허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란 제1호 중 “측차부”를 “운반차”로 한다.

별표 20 제1호바목 중 “견관절”을 “어깨관절”로 하고, 같은 호 자목 및 카목 중 “고관절”을 각각 “엉덩관절”로 한다.

별표 22의 (주)제2호나목 중 “고관절”을 “엉덩관절”로 한다.

별표 23 제1호사목의 구조란 중 “직경”을 각각 “지름”으로, “지주”를 “기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(주)제5호가목(2) 중 “지주”를 “기둥”으로 하며, 같은 목 (5) 중 “지주간격”을 “기둥 간격”으로 하고, 같은 호의

(주)제6호다목 중 “4천 RPM”을 “4천 RPM(분당 회전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제1호의2마목의 구조란 2) 중 “직경”을 각각 “지름”으로, “지주”를 “기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비고 제5호가목 2) 중 “지주”를 “기둥”으로 하며, 같은 목 5) 중 “지주간격”을 “기둥 간격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라목의 구조란 및 시험방법란 중 “라바콘”을 각각 “교통콘”으로 한다.

별표 24 제3호가목의 감점방법란 중 “라바콘”을 “교통콘”으로 한다.
별표 28 제1호나목(5) 중 “소정의”를 “정해진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(1)(가), (나) 본문 및 (다) 본문 중 “교육필증”을 각각 “교육확인증”으로 하며, 같은 목 (3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3)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**계산할 때** 10일 미만의 날짜는 산입하지 않으며,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별표 32 제2호 제1종 보통(연습)면허 및 제2종 보통(연습)면허의 학과교육의 교육내용란 중 “악천후운전”을 “거친 날씨의 운전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제1종 대형면허의 학과교육의 교육내용란 중 “악천후운전”을 “거친 날씨의 운전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제1종 특수면허의 대형 견인차·구난차의 학과교육의 교육내용란 중 “악천후운전”을 “거친 날씨의 운전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제1종 특수면허의 소형 견인차의 학과교육의 교육내용란 중 “악천후운전”을 “거친 날씨의 운전”으로 한다.

별표 34 II. 강사의 개별기준 제7호가목 중 “수수한 때”를 “받았을 때”

로 하고, 같은 호 바목 중 “취득행위에 조력한 때”를 “취득행위를 도운 때”로 하며, 같은 표 III. 기능검정원의 개별기준 제8호가목 중 “수수한 때”를 “받았을 때”로 하고, 같은 호 바목 중 “취득행위에 조력한 때”를 “취득행위를 도운 때”로 한다.

별표 35 II. 개별기준 교통안전교육의 세부 내용란 제35호나목 중 “교육필증”을 “교육확인증”으로 한다.

별표 39 제5호 중 “신고필증”을 “신고증명서”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“신고필증”을 “신고증명서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0호의4서식 중 “교육필 압인”을 “교육확인 누름도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(주) 중 “압인하고”를 “눌러 찍고”로 한다.

별지 제20호의5서식 앞쪽 중 “교육필 압인”을 “교육확인 누름도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1호서식 현장상황의 중앙분리시설란 중 “방책(防柵)”을 “방호울타리”로 하고, 같은 서식의 현장상황의 보차도분리시설란 중 “펜스”를 “울타리”로 하며, 같은 서식의 현장상황의 특수사고란 중 “개문발차(開門發車)”를 “개문발차(문열림 출발)”로 한다.

별지 제25호서식 중 “소정의 교통안전교육”을 “교통안전교육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 중 “인장”을 “도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0호서식 제1호 중 “탈모,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”를 “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”로 한다.

별지 제34호서식 중 “교육필증 번호”를 “교육확인증 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5호서식 제목 중 “교육필증발급대장”을 “교육확인증 발급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교육필증번호”를 “교육확인증 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8호서식 중 “인장”을 “도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왼쪽 및 오른쪽의 신청내용란 중 “적검미필”을 각각 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오른쪽 중 “정신분열증·정동장애(情動障礙)”를 “조현병·정동장애”로 하며, 같은 서식의 뒤쪽 오른쪽 중 시력란 중 “양안”을 각각 “두 눈”으로,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란 중 “상지”를 각각 “팔”로 하며, 같은 난 중 “하지”를 각각 “다리”로 한다.

별지 제42호의2서식 앞쪽의 왼쪽 및 오른쪽의 신청내용란 중 “적검미필”을 각각 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오른쪽의 시력란 중 “양안”을 각각 “두 눈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5호서식 뒤쪽 중 “86mm×54mm(PVC(비닐) 980.4g/m²)”를 “86mm×54mm[폴리염화비닐(PVC) 980.4g/m²]”로 한다.

별지 제55호의2서식 뒤쪽 중 “PVC(비닐)”를 “폴리염화비닐(PVC)”로 한다.

별지 제59호서식 뒤쪽 중 “영수필증”을 “영수확인증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4호서식 1쪽 중 “영수필증 첨부란”을 “영수확인증 첨부란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2쪽 중 “정신분열증·정동장애(情動障礙)”를 “조현병·정동장애”로 하며, 같은 2쪽 중 “양안”을 각각 “두 눈”으로 하고, 같은 2쪽 중 “상지”를 각각 “팔”로 하며, 같은 2쪽 중 “하지”를 각각 “다리”로 한다.

별지 제65호서식 1쪽 중 “영수필증 첨부란”을 “영수확인증 첨부란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2쪽 시력란 중 “양안”을 각각 “두 눈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4호서식 중 “사지운동(Extermities)”을 각각 “팔다리운동(Extermities)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영수필증 첨부란”을 “영수확인증 첨부란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“양안”을 각각 “두 눈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상지(Upper)”를 각각 “팔”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“하지(Lower)”를 각각 “다리”로 한다.

별지 제80호서식 중 “상신”을 “보고”로 한다.

별지 제81호의2서식 중 “절취선”을 “자르는 선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3호서식 중 “입회자”를 “참관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93호서식 뒤쪽 좌측 제1호 중 “탈모,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”를 “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”로 한다.

별지 제96호서식 출력장치란 중 “물프리터”를 “물프린터[물리에 액정 표시장치(LCD) 재료를 묻혀 인쇄하는 프린터]”로 한다.

별지 제106호서식 제1쪽 및 제3쪽 중 “탈모,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”를 각각 “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”로 한다.

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중 “PVC(비닐)”을 “폴리염화비닐(PVC)”로 한다.

별지 제114호서식 앞쪽 중 “탈모,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”를 “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”로 한다.

별지 제115호서식 앞쪽 중 “탈모,”를 “모자를 쓰지 않은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PVC(비닐)”을 “폴리염화비닐(PVC)”로 한다.

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7호 및 제8호 중 “인장”을 각각 “도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17호서식 뒤쪽 좌측 제1호 중 “탈모,”를 “모자를 쓰지 않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가목 중 “인장”을 “도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27호서식 중 “영수필증 첨부란”을 “영수확인증 첨부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29호서식 중 “탈모,”를 “모자를 쓰지 않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34호서식 중 “압인”을 “누름도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소정의”를 “정해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36호서식 중 “압인”을 “누름도장”으로 하고, “소정의”를 “정해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50호서식 구비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“상반신 탈모”를 “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50호의2서식 앞쪽 중 “탈모,”를 “모자를 쓰지 않은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중 “(PVC(비닐) 980.4g/m²)”를 “[폴리염화비닐(PVC) 980.4g/m²]”로 한다.

별지 제154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“절취선”을 각각 “자르는 선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55호서식 제1쪽 중 “절취선”을 “자르는 선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55호의2서식 앞쪽 중 “절취선”을 “자르는 선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59호의2서식 앞쪽 중 “절취선”을 “자르는 선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사행

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별”을 “각 호별”로, “기재하여야”를 “기재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복표발행업”을 “복권발행업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복표”를 “복권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”를 “변경기록하거나 재교부해야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에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당해사행기구가 소정의”를 “해당 사행기구가 정해진”으로,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검사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”을 “검사합격증의 부착 등 표시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아니 하도록”을 “않도록”으로, “부착 또는 압날하여야”를 “부착 등의 표시를 해야”로 한다.

별표 4 제1호다목 중 “지불하는”을 “지급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나목(1) 중 “지불기간”을 “지급기간”으로, “지불외의”를 “지급 외의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지불”을 “지급”으로 하고, 같은 목 (2) 중 “지불대장”을 “지급대장”으로, “당첨금지불”을 “당첨금 지급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제3호자목 중 “지불개시일”을 “지급개시일”로 한다.

별표 11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복권발행업,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

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“복표발행법”을 “복권발행업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가목 표 외의 부분 중 “복표발행업, 현상업, 기타 사행행위업”을 “복권발행업,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복표발행업, 현상업 기타 사행행위업”을 “복권발행업,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“복표발행업”을 “복권발행업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복표발행업”을 “복권발행업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2호서식 중 “임검”을 각각 “현장검사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임검자”를 “현장검사자”로 한다.

제9조(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 중 “나. 지주: 정주식 또는 측주식”을 “나. 기둥: 가운데기둥식 또는 옆기둥식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청원경찰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“기동모”를 “기동모(활동에 편한 모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, “성하복(盛夏服)”을 “한여름 옷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식(制式)과 재질”을 “형태·규격 및 재질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“제식”을 각각 “형태·규격”으로, 같은 호 본문 중 “통일하여야”를 “통일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,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“제식과 재질”을 각각 “형태·규격 및 재질”로 한다.

제14조제3항 후단 중 “정선순찰(定線巡察)”을 “정선순찰(정해진 노선을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)”로, “요점순찰(要點巡察)”을 “요점순찰(순찰구역 내 지정된 중요지점을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)”로, “난선순찰(亂線巡察)”을 “난선순찰(임의로 순찰지역이나 노선을 선정하여 불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)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리하여야”를 “관리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총가(銃架)”를 “총받침대”로, “하여야”를 “갖추어

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탄약에 분실·도난·피탈(被奪)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”를 “탄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”로,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보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“분실·도난·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”를 “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었을 때”로, “배상하여야”를 “배상해야”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“사의(辭意)”를 “사직 의사”로 한다.

별표 2의 품명란 중 “성하복”을 “한여름 옷”으로 한다.

별도 1 중 “제식”을 각각 “형태 및 규격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가목 중 “시린다”를 “실린더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시린다”를 “실린더”로, “아니할”을 “않을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가목 중 “그밖의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“난옥꽃불”을 “난옥꽃불(둥근 막대형 통에서 구슬모양의 발사체를 연속해서 쏘아 올리는 꽃불을 말한다)”로, “그밖의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8조제33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8조제33호에 따른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전

기개폐기”를 “전기스위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캡타이어케이블”을 “캡타이어케이블(경질고무케이블)”로, “아니하도록”을 “않도록”으로 한다.

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“그 밖에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광쇄총”을 “광쇄총(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총을 말한다)”으로, “동등이상”을 “같은 수준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동등이상”을 “같은 수준 이상”으로, 같은 조 제3호 중 “시멘트소성로”를 “시멘트가마(시멘트를 굽는 가마를 말한다)”로 “동등이상”을 “같은 수준 이상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4항 중 “소정의”를 “정해진”으로, “기재하여야”를 “기재해야”로 한다.

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41조에 따른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가공지선”을 “가공지선(송전선에 베타이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송전선 위에 도선과 나란히 가설하여 접지한 전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39조의 제목 “(신고필증)”을 “(신고증명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제38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8조에 따른”으로, “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”을 “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”로, “교부하여야”를 “교부해

야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8조제3항에 따른”으로, “신고필증에 부기하여야”를 “신고증명서에 덧붙여 적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신고필증을”을 “신고증명서를”로, “지체없이 당해”를 “지체 없이 해당”으로, “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한다.

제40조의 제목 “(신고필증의 반납)”을 “(신고증명서의 반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9조제1항에 따라”로, “신고필증을”을 “신고증명서를”로,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”를 “신고증명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신고필증”을 “신고증명서”로, “신고필증을”을 “신고증명서를”로, “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한다.

제44조제2항제2호 중 “칭량병”을 “칭량병(고체, 액체의 분석 시료를 정밀하게 시험할 때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6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조시제품”을 “제조시험제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, “소정의”를 “정해진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2호 중 “시린다”를 “실린더”로 한다.

별표 2 제1호 중 “표준직경(탄알의 지름)”을 “탄알의 표준 지름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3호 중 “표준직경”을 “탄알의 표준 지름”으로 한다.

별표 6 제1호 1. 쏘아올리는 꽃불류의 경우의 세부기준란 가목 중 “소정의”를 “정해진”으로 한다.

별표 7 제2호의 위험공실등란 중 “풍건공실”을 “풍건공실(바람을 쐬어 말리는 작업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난 중 “사분공실”을 “사분공실(일정한 크기의 화학류 알갱이를 걸러내기 위해 체로 고르는 작업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며, 같은 난 중 “분상약건조공실”을 “분상약 건조공실(수분이 함유된 가루형태의 화학류를 건조하는 작업실을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표 제3호 위험공실등란 중 “날화공실”을 “날화공실(점도가 높은 재료를 섞거나 반죽하는 작업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며, 같은 난 중 “예날화공실”을 “예날화공실(온도를 높이는 등 날화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실을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난 중 “압신공실”을 “압신공실(화학류에 압력을 가하여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작업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며, 같은 난 중 “전약공실”을 “전약공실(화학 제조실)”로 하고, 같은 표 제4호 위험공실등란 중 “분쇄사분공실”을 “분쇄사분공실(입자가 큰 화학류를 적합한 크기로 분쇄한 후 체로 고르는 작업실)”로 하며, 같은 표 제5호 위험공실등란 중 “수전약공실”을 “수동 전약공실”로 하고, 같은 표 제7호 위험공실등란 중 “불식사분공실”을 “불식사분공실(습식으로 섞은 폭분을 통풍과 열풍으로 건조시켜 체로 거르고 소량씩 배분하는 작업실을 말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표 제14호 위험공실등란 중 “점화약도포공실”을 “점화약도포공실(전기뇌관 또는 전기도화선에 점화약을 바르는 작업실을

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난 중 “점화약피막공실”을“점화약 피막공실(점화약에 막을 씌우는 장소를 말한다)”로 하며, 같은 난 중 “점화약도포 건조공실”을 “점화약도포건조공실(전기뇌관 또는 전기도화선에 점화약을 바르고 말리는 작업실을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표 제17호 정체량의 범위란 중 “착관약협”을 각각 “착관화약통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제21호 위험공실등란 중 “제1종도폭선심약준비공실”을 “제1종도폭선 심지화약 준비공실”로, “제2종도폭선심약준비공실”을 “제2종도폭선 심지화약 준비공실”로, “제2종도폭선심약사분공실”을 “제2종도폭선 심지화약 사분공실(심지화약을 체로 고르는 작업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2호 위험공실등란 중 “심약일시저치장”을 “심지화약 일시저치장”으로, “심약개함공실”을 “심지화약 개함공실”로, “심약사분공실”을 “심지화약 사분공실”로, “심약분배공실”을 “심지화약 분배공실”로, “심약혼전공실”을 “심지화약 혼전공실”로 하며, 같은 표 제24호 위험공실등란 중 “약협화관부착공실”을 “화약통 화관부착공실”로 하고, 같은 표 제35호 정체량의 범위란 중 “직경80센티미터이상의타상연화”를 “지름 80센티미터 이상의 타상연화”로 하며, 같은 표 제36호 위험공실등란 중 “재단천공 · 공실”을 “재단천공공실(장난감용 꽃블루를 자르거나 구멍을 뚫는 작업실을 말한다)”로 한다.

별표 8 제1호다목 중 “수불부”를 “출납 장부”로, “소정의”를 “정해진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9호나목(2) 중 “충가”를 “충받침대(충가)”로 하며, 같은 표 제12호다목 중 “소정사항”을 “정해진 사항”으로 하고, 같

은 표 제14호(2) 중 “충기의 도난 · 피탈”을 “충기의 도난 및 빼앗김”으로 한다.

별표 9 제2호나목3)나) 중 “천공”을 “천공(구멍 뚫기)”로 한다.

별표 11의2 제2호다목 전기뇌관의 점화전류시험의 합격기준란 중 “통전”을 “통전(通電)”으로 하고, 같은 목 전기뇌관의 내수시험의 합격기준란 중 “침지한 다음”을 “담근 후”로 하며, 같은 목 공업용 뇌관(비전기내관)의 내수시험의 합격기준란 중 “침지한 다음”을 “담근 후”로 한다.

별표 12 제1호 목재의 수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표 제4호 재료 및 규격란 제8호(2) 중 “선단부를”을 “끝부분을”로, “선단부는”을 “끝부분을”로 한다.

나 무 의 종 류	한국산업규격 KS A2151의	한국산업규격 KS A2151의	한국산업규격 KS A2151의
41의(1)의 나무(가문바나 무, 소나무, 전나무, 나왕, 미송, 그 밖에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강도를 가진 나 무)이어야 한다. 덧대기 재 료도 또한 같다.	41의(1)의 나무(가문바나 무, 소나무, 전나무, 나왕, 미송, 그 밖에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강도를 가진 나 무)이어야 한다. 덧대기 재 료도 또한 같다.	41의(1)의 나무(가문바나 무, 소나무, 전나무, 나왕, 미송, 그 밖에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강도를 가진 나 무)이어야 한다. 덧대기 재 료도 또한 같다.	41의(1)의 나무(가문바나 무, 소나무, 전나무, 나왕, 미송, 그 밖에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강도를 가진 나 무)이어야 한다. 덧대기 재 료도 또한 같다.

별표 16 제2호 중 “제조 시제품”을 “제조시험제품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열충 및 사격충의 안전도(내압)시험의 가목의 검사 및 합격기준란2) 후단 중 “약협(藥莢)”을 “화약통”으로 한다.

별표 16의2 제2호가목의 검사항목란 및 검사합격기준란 중 “직경”을

각각 “지름”으로 한다.

별표 16의5 제2호나목 1의 시험기기명란 중 “경도시험기”를 “경도(단단한 정도) 시험기”로 하고, 같은 목 8의 시험기기명란 중 “시린다게이지”를 “실린더게이지”로 한다.

별표 18 제1호가목 중 “제조시제품종합검사”를 “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가목의 “제조시제품 종합검사”를 “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”로 한다.

별지 제10호의3서식 중 “정신분열증·정동장애(情動障礙)”를 “조현병·정동장애”로 하고, 같은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란 중 “정신분열병, 분열형 정동장애, 양극성 정동장애”를 “조현병, 조현정동장애, 양극성 정동장애(조울병)”로 한다.

별지 제10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나목 중 “수입신고필증”을 “수입신고확인증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중 “소정의 교육과정”을 “정해진 교육과정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1호서식 중 “화약류 운반 신고필증”을 “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”로 한다.

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의견제출 기관란 중 “모사전송”을 “팩스”로 한다.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) 경찰청장은 <u>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</u>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<u>제9조의 규정에 의한</u>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은 <u>자</u> 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에 <u>소정의 사항</u> 을 기재한 후,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<u>교부</u> 하여야 한다.	제11조(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) ----- <u>법 제11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- <u>제9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사람에게는</u> ----- ----- ----- <u>정해진</u> ---- ----- ----- <u>교부</u> ----- <u>해야</u> ----.
제18조(무기의 관리수칙 등) ① <u>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(이하 “시설주”라 한다) 또는 <u>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</u> 관리책임자(이하 “관리책임자”라 한다)는 다음 <u>각호의</u>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(탄약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<u>관리</u> 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·방습·방화	제18조(무기의 관리수칙 등) ① <u>법 제14조제4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<u>같은 조 제7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<u>각 호의</u> ----- ----- ----- <u>관리</u> ----- <u>야</u> 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

및 <u>총가</u> 등의 시설을 할 것 3. ~ 8. (생략) ② ~ ④ (생략) ⑤시설주는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무기를 <u>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</u>,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<u>회수하여야</u> 한다. 1. (생략) 2. <u>사의</u>를 표명한 사람 3. 4. (생략) ⑥ (생략)	-- <u>총받침대</u> ----- 3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⑤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----- <u>지급해서는 안 되며</u>----- ----- -- <u>회수해야</u> 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사직 의사</u>----- 3. 4.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-

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인사기록카드의 열람) ① (생략)	제16조(인사기록카드의 열람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담당자의 입회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.	②----- ----- ----- <u>참관하에</u> ----- <u>열람</u> <u>해야</u> 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2장 경찰복식의 종류 및 제식</u>	<u>제2장 경찰복식의 종류·형태 및 규격</u>
제3조(경찰복식) 경찰복식은 경찰모(警察帽), 경찰제복, 경찰화(警察靴), 계급장, <u>경찰장건장</u> , 휘장(徽章)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,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.	제3조(경찰복식) ----- ----- ----- <u>경찰장 어깨표장</u> ----- ----- -----.
제4조(경찰모) 경찰모는 정모(正帽)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, 그 <u>제식(制式)</u> 은 별표 1과 같다.	제4조(경찰모) ----- ----- <u>형태 및 규격</u> -----.
제5조(경찰제복)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, 그 <u>제식</u> 은 별표 2와 같다. 1. ~ 7. (생략)	제5조(경찰제복) ----- ----- <u>형태</u> <u>및 규격</u>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
제6조(경찰화)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, 그 <u>제식</u> 은 별표 3과 같다. 1. ~ 3. (생략)	제6조(경찰화) ----- ----- <u>형태 및 규격</u>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7조(<u>계급장 및 경찰장건장</u>) ① (생략) ② <u>경찰장건장</u> 은 근무장(반외투는 제외한다) 차림을 하는 경우	제7조(<u>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</u>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경찰장 어깨표장</u> ----- -----

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,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	----- -----.
③ 제1항 및 제2항의 <u>제식</u> 은 별표 4와 같다.	③ ----- <u>형태 및 규격</u> -----.
제8조(휘장)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, 그 <u>제식</u> 은 별표 5와 같다. 다만, 제9호의 <u>제식</u> 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.	제8조(휘장) ----- ----- <u>형태 및 규격</u> ----- ----- <u>형태 및 규격</u> -----.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제9조(부속물)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, 장갑, 외근경찰관 방한장갑, 귀덮개, 넥타이, 넥타이핀, 단추,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, 그 <u>제식</u> 은 별표 6과 같다.	제9조(부속물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형태 및 규격</u> -----.
제10조(특수복식)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, 그 <u>제식</u> 은 별표 7과 같다.	제10조(특수복식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형태 및 규격</u> -----.
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<u>제식</u> 을 따로 정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<u>형태 및 규격</u> -----.
제12조(복식의 차림) ① (생 략)	제12조(복식의 차림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계급장 또는 <u>경찰장견장</u> , 휘	② ----- <u>경찰장 어깨표장</u> ---

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2와 같다.	-----.
제15조(근무장)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5조(근무장) ①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가슴표장, 계급장(약장) 또는 <u>경찰장견장</u> , 이름표	5. ----- <u>경찰장 어깨표장</u> -----
6. · 7. (생 략)	6. ·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세부 사항) 의무경찰 복식의 <u>제식</u> , 착용 구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복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,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.	제20조(세부 사항) ----- -- <u>형태 및 규격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) ① (생략)	제19조(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) ① (현행과 같음)
②비·안개·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경찰청장 또는 시·도경찰청장이 별표 6 I.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,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.	②-----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----- 따라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37조의5(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) ① (생략)	제37조의5(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교육인원 등을 감안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	② ----- 고려하여 -----

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	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47조(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) ①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(이하 “교통안전교육기관”이라 한다)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47조(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) ①----- 지정을 받으려는 자----- 제출해야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(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것을 말한다) 및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·운영책임자 및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인장의 인영	6. ----- 도장-- 인영(印影: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9조(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) ①·② (생략)	제49조(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	③-----

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제46조제4항에 따라 <u>교육필증</u> 을 교부하고, <u>교육필증</u> 발급현황을 별지 제35호 서식의 <u>교육필증발급대장</u> 에 기록하여 <u>보관</u> 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 <u>교육확인증</u> ----- <u>교육확인증</u> ----- ----- <u>교육확인증</u> 발급대장----- ----- <u>보관</u> 해야 -----.
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<u>교육필증</u> 을 받은 사람이 <u>교육필증</u> 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<u>교육필증발급대장</u> 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재발급할 수 있다.	④----- ----- <u>교육확인증</u> ----- --- <u>교육확인증</u> ----- ----- <u>교육확인증</u> 발급대장----- -----.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13조(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)	제113조(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)
①학원을 설립·운영하는 자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<u>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</u> 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경찰청장에게 <u>제출</u>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호 내지 제9호의 서류는 시·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<u>이를 제출</u> 할 수 있다.	① ----- ----- --- <u>지정을 받으려는 경우</u> --- ----- ----- ----- <u>제출</u> 해야 ----- --. -- <u>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</u> ----- ----- <u>제출</u> 할 ----- 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(설립·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)의 <u>인장</u> 의 인영	7. ----- ----- ----- <u>도장</u> ----- -----
8.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1부,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<u>인장</u> 의 인영	8. ----- ----- ----- <u>도장</u> -----
9. ~ 13. (생 략)	9. ~ 1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6조(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) ①영 제68조에 따라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<u>변경하고자 하는 때</u> 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경찰청장에게 <u>제출</u> 하여야 한다.	제116조(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) ①----- ----- <u>변경하려는 경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출</u> 해야 -----.
1. 학감의 변경	1. -----
가. 학감 <u>인장</u> 의 인영	가. -- <u>도장</u> -----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21조(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)	제121조(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)
①·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제1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도로	③----- -----

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) ①·② (생략) ③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별로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<u>복표발행업</u> 및 현상업의 경우 가·나. (생략) 다. <u>복표</u> 또는 투표권의 지정 판매소의 명칭·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. (생략) 2. 삭제 3. (생략) ④ (생략)	제3조(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각 호별 ----- 기재해야 ----. 1. <u>복권발행업</u> ----- -- 가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<u>복권</u> ----- ----- 라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제4조(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 변경) ① (생략) ② 허가신청은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허가증을 <u>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</u> 한다.	제4조(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 변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변경기록하거나 재교부해야</u> ----.
제20조(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) ① (생략)	제20조(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) ① (현행과 같음)

교통공단은 신청서류의 <u>영수필증</u> 에 소인하고,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자 명단을 작성한 후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·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한다. ④ (생략)	----- <u>영수확인증</u> 에 접수 도장을 찍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제131조(수수료 등) ①·② (생략) ③ 법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,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<u>영수필증</u> 을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운전면허증 교부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. ④·⑤ (생략)	제131조(수수료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영수확인증</u> ----- ----- -----.
⑥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<u>영수필증</u> 은 도로교통공단이 발행·관리하고, 그 종류·규격·모양 그 밖에 요금계기 및 인영인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.	⑥ ----- <u>영수확인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당해사행기구가 소정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,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②제1항에 따른 ----- 해당 사행기구가 정해진 ----- 대해 서는 ----- 해야 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의 부착 또는 압날	2. ----- 검사합격증의 부착 등 표시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 삭제	④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사행기구의 표시기준) ① (생략)	제21조(사행기구의 표시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 또는 압날하여야 한다.	②제1항에 따른 ----- 않도록 ----- 부착 등의 표시를 해야 -----.

현행	개정안
제9조(복제) ①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·장구(裝具)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9조(복제) ① -----
1. 제복: 정모(正帽), 기동모, 근무복(하복, 동복), 성하복(盛夏服), 기동복, 점퍼, 비옷, 방한복, 외투, 단화, 기동화 및 방한화	-----
2.·3. (생략)	-----
②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·장구(裝具) 및 부속물의 제식(制式)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9조(복제) ① -----
1.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,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,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, 기동복의 제식은 별도 1과 같이 한다.	1. ----- 기동모(활동에 편한 모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----- 한여름 옷 -----

	2.·3. (현행과 같음)
	② -----
	----- 형태·규격 및 재질-----

	1. ----- 형태·규격 -----

	----- 통일해야 -----.

	----- 형태 및 규격-----
	-----.

2. 장구의 제식과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.

3. 부속물의 제식과 재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.

가. 모자표장의 제식과 재질은 별도 2와 같이 하되,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할 것.

나. 가슴표장, 휘장, 계급장, 넥타이핀 및 단추의 제식과 재질은 별도 3부터 별도 7까지와 같이 할 것.

③·④ (생략)

제14조(근무요령) ①·② (생략)

③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. 이 경우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(定線巡察)을 하되,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(要點巡察) 또는 난선순찰(亂線巡察)을 할 수 있다.

2. ---- 형태·규격 및 재질-----.

3. ----- 형태·규격 및 재질-----.

가. ---- 형태·규격 및 재질-----.

나. ----- 형태·규격 및 재질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근무요령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.
----- 정선순찰(정해진 노선을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)-----
요점순찰(순찰구역 내 지정된 중요지점을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) ---- 난선순찰(임의로 순찰 지역이나 노선을 선정하여 불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)

④ (생략)
제16조(무기관리수칙) ① 영 제16조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대여 받은 청원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3.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·방습·방화 및 충가(銃架)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.

4. ~ 6. (생략)

7.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·도난·피탈(被奪)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8.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·도난·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시·사변·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시

다)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무기관리수칙) ① -----

----- 관리해야 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- 충받침대 ----- 갖추어야 ----.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탄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----- 통보해야 ----.

8. -----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었을 때----- 배상해야 -----.

· 도경찰청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<u>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----- ---- <u>그렇지 않다.</u>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며,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<u>사의(辭意)</u> 를 밝힌 사람	3. <u>사직 의사</u> -----
4. ~ 6. (생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총포의 구조 및 성능) ①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.	제2조(총포의 구조 및 성능) ①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공기총(공기 또는 가스압축식·용수철식·가스용수철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구조 및 형식은 다음과 같다.	4. ----- ----- -----.
가. 공기총의 총신과 압축실 <u>시린다</u> 는 이은 자리가 없고 1제곱센티미터당 180킬로그램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할 것	가. ----- <u>실린더</u> ----- ----- -----
나. 삭제	
다. 공기총의 압축실 <u>시린다</u> 전체의 체적은 500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지 <u>아니</u> 할 것	다. ----- <u>실린더</u> ----- ----- <u>않</u> 을 --
라. ~ 아. (생략)	라. ~ 아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조(장난감용 꽃불류) ①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제3호아목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조(장난감용 꽃불류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날기를 주로 하는 것	4. -----
가. 피리로켓트꽃불 <u>그밖의</u> 피리소리를 내며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로서 화약 0.5그램이하, 폭약 2그램이하인 것	가.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
나.·다. (생 략)	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5.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	5. ----- -----
가. <u>난옥꽃불 그밖의</u> 위로 쏘아올리는 등근통꽃불류로서 단발식이고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또는 연발식이고 등근통의 안지름이 1센티미터이하이며, 화약 15그램이하인 것	가. <u>난옥꽃불(등근 막대형 통에서 구슬모양의 발사체를 연속해서 쏘아 올리는 꽃불을 말한다) 그 밖의</u> --- ----- ----- -----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6. ~ 11. (생 략)	6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4조(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) ① 영 제8조제33호의 규정에 의한 축전지차의 구조의 기준은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	제14조(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) ①-- <u>제8조제33호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전동기정류자·제어기· <u>전기</u> <u>개폐기</u> ·전기단자 그 밖의 불꽃이 생길 염려가 있는 전기장치에는 화재나 폭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차폐장치를 할 것	4. ----- <u>전기</u> <u>스위치</u> ----- ----- ----- -----
5. 전기배선은 <u>캡타이어케이블</u> 을 사용하여 배선사이 및 배선과 차체사이에 절연이 유지되도록 고정시키고, 접속부분은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<u>아니하도록</u> 할 것	5. ----- <u>캡타이어케이블</u> (<u>경질고무케이블</u>)----- ----- ----- ----- <u>않도록</u> -----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산업용총포)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“ <u>그 밖에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</u> ”이라 함은 다음 <u>각호</u> 의 것을 말한다.	제23조(산업용총포) ----- ----- “ <u>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</u> ”이란 ----- -- <u>각 호</u> -----.
1. 광산용에 사용되는 총포로서	1. -----

<u>광쇄총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</u>	<u>광쇄총(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총을 말한다)--- 같은 수준 이상-----</u>
2. 건설용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타정총과 <u>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</u>	2. ----- 같은 수준 이상-----
3. <u>시멘트소성로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청소총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</u>	3. <u>시멘트가마(시멘트를 굽는 가마를 말한다)--- 같은 수준 이상-----</u>
제31조(화약류양도·양수의 허가 신청) ① ~ ③ (생략)	제31조(화약류양도·양수의 허가 신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화약류를 양도할 때 양도인은 양수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화약류 양도·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·양수인기재란에, 화약류를 양수할 때 양수인은 양도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·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·양수인기재란에 <u>소정의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.</u>	④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해진</u> ----- <u>기재해야</u> ----.
제36조(피뢰장치) <u>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뢰장치의 위치·형식·구조 및 재료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</u>	제36조(피뢰장치) <u>영 제41조에 따른</u> ----- <u>각</u> ----- <u>호</u> ----- <u>따른다.</u>
1. 피뢰장치는 피뢰침·피뢰도	1. -----

<u>선·가공지선 및 전극으로 할 것</u>	<u>--가공지선(송전선에 벵락이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송전선 위에 도선과 나란히 가설하여 접지한 전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-----</u>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39조(신고필증) ①경찰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<u>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경찰서장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부기하여야 한다.	제39조(신고증명서) ① ----- 제38조에 따른 ----- ----- <u>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</u> 를 ----- <u>교부해야</u> ----. ----- <u>제38조제3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신고증명서에 덧붙여 적어야</u> -. ②----- <u>신고증명서를</u> ----- ----- <u>지체 없이 해당</u> -- ----- ----- <u>통지</u> 해야 ---.
②제1항의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찰서장은 <u>지체없이</u> 당해 운반 화약류의 종류·수량·통과일시등 필요한 사항을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<u>통지</u> 하여야 한다.	
제40조(신고필증의 반납)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신고필증을 <u>지체없이</u> 반납하여	제40조(신고증명서의 반납) ①제39조제1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----- <u>각</u> ----- <u>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<u>신</u> <u>고증명서를 지체 없이</u> 반납해야

야 한다.	----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<u>신고필증</u> 의 반납은 화약류의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하되,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하고 반납받은 경찰서장은 <u>신고필증</u> 을 교부한 경찰서장에게 이를 <u>통지하여야</u> 한다.	②----- <u>신고증명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신고증명서를</u> ----- ----- <u>통지해야</u> ----.
제44조(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 등) ① (생 략)	제44조(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영 제63조에 따른 화약류의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시험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가열시험기는 <u>칭량병</u> 및 <u>칭량시험기</u> 로 할 것	2. ----- <u>칭량병(고체, 액체의 분석 시료를 정밀하게 시험할 때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-----
3. 4. (생 략)	3. 4. (현행과 같음)
제50조(총포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검사) ①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6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 총포의 검사는 별표 16, 분사기의 검사는 별표 16의2, 전자	제50조(총포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검사) ①----- ----- <u>제6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

충격기의 검사는 별표 16의3, 석궁의 검사는 별표 16의4의 기준에 의하되,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제조시제품</u> 종합검사(제조허가를 받아 처음 제조한 총포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검사)	1. <u>제조시험제품</u> ----- ----- -----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총포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.	②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검사결과 합격품에 <u>대하여는</u> 총포는 기관부 왼쪽, 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은 손잡이 부분 또는 몸통과 총포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출처 증명서에 각각 <u>소정의</u> 합격표시를 한다.	2. ----- <u>대해서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해진</u> ----- -----.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02-3150-0342